

## 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20일, 김광성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광성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배부·보고 및 회부)제2항과 제57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상호충돌함에 따라 지속적인 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여, 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‘배부·보고 및 회부’ 규정 수정(안 제23조)
- ‘의안 등의 상정시기’ 규정 삭제(안 제57조)
- ‘의안 등의 상정시기’ 규정 신설(안 제23조의2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○ 본 규칙 개정안은

규정 간의 내용적 상호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회의 운영 시 지속적인 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의안의 회부 또는 상정 주체를 기존 “위원회 또는 위원장” 에서 “의장” 으로 변경하여 적법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

일부 의안 상정시기를 앞당겨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회의 준비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##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보고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한다.

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제57조를 제23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57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원회는”을 “의장은”으로, “위원회에 회부(재회부는 제외한다)된”을 “접수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“5일”을 “7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7일”을 “10일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5일”을 “7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의장”으로, “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”을 “의사일정”으로 하며, 제57조는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음 각 목의 안건

가.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: 7일

나. 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보고서 및 계획서: 5일

3. (생략)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심사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.

제57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

-----

가. -----  
----- 10일

나. -----  
-----  
7일

3. (현행과 같음)

③ 의장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의사일정-----  
-----  
-----.

<삭제>